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49
----------	-------

발의연월일 : 2026. 4. 20.

발 의 자 : 정동만 · 이인선 · 김선교
김성원 · 김용태 · 김정재
서지영 · 박성훈 · 김기웅
박성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이를 정한 시행령에서는 도로·철도·하천 개수로에 의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인 소규모 단절 토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소규모 단절 토지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단절 토지에 대하여 법에 직접 규정하여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관련 정비계획을 통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념과 이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주민 불편 해소·생활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정비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만 해당한다)·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開水路)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이하 “소규모 단절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단절 토지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행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